

2017.12.28.제정
2018.12.18.개정
2019.04.17.개정
2021.12.21.개정
2026.02.23.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 학회의 명칭은 "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학회"(이하 '본 학회'라 칭함)라 하며, 영문으로는 "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Safety(약칭은 "KICS"라 한다)"라 한다.

제2조(목적) 우리 학회는 건설사업의 생애주기에 걸쳐 안전, 보건, 환경 및 품질 분야의 학문과 기술의 통합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, 안전한 건설사업의 수행을 통한 시민의 행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

- ① 학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- ② 본 학회는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4조(사업)

- ①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1. 건설안전 연구 및 조사
 2. 건설안전 학회지, 기술지, 논문집, 전문서적 등 도서 발간
 3. 건설안전 학술대회, 강연회, 강습회, 전시회 등의 개최
 4. 건설안전 교육, 지도 및 평가 사업
 5. 건설안전 견학 및 시찰
 6. 건설안전 관련 기준의 연구
 7. 건설안전 정책에 대한 조사, 연구, 자문 및 건의
 8. 건설안전에 대한 국제 교류
 9. 건설안전 공로 표창 및 장학 사업
 10.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2장 회원

제5조(회원의 구분 및 자격)

- ① 본 학회는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정회원, 학생회원, 명예회원,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하며,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.
 1. 건설산업 또는 안전분야 종사자
 2. 안전, 보건,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안전분야의 기술개발과 그 응용에 대한 공적이 있는 자
 3. 건설 또는 안전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
 4.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,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

- ③ 학생회원: 학부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. 학생회원은 입회 후 그 자격이 일반회원의 자격기준을 만족시킬 때 일반회원으로 전환해야 한다. 학생회원은 본 학회의 제반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.
- ④ 명예회원: 본 학회에 탁월한 기여를 한 자로서 학회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된다. 명예회원은 회원이 갖는 모든 권리를 가지며 입회비 및 회비를 면제받는다.
- ⑤ 특별회원: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며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단체나 개인
- ⑥ 단체회원: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며 건설산업과 안전보건 관련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

제6조(회원의 권리)

- ① 회원은 학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- ② 회원은 학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, 학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
제7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
1.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
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3.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

제8조(회원의 탈퇴 제명)

-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- ② 회원이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2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-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
제9조(자격정지 및 복권)

- ① 학회의 회원으로서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는 체납 회비를 모두 납부할 경우 회원 자격이 회복된다.
- ③ 장기 해외 장기출장, 유학 등 특별한 사유로 연회비 불입이 곤란한 회원에 대하여서는 연회비 불입을 유예할 수 있으며, 이 유예기간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

제3장 임원 및 사무국

제10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우리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회장: 1명
2. 부회장: 15명 이내 (부회장 중 1명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임한다)
3. 감사: 2명
4. 이사: 회장, 부회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60명 이내

제11조(임원의 임기)

-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② 임원의 임기 중 생긴 때에는 보선으로 충원할 수 있으며,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이 정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2조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결원이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금지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2.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3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4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임원이 임기중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으며,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13조(임원의 선출방법 및 시기)

- ① 학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다만, 나머지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-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,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-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4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1. 본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15조(임원의 직무)

-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주재 한다.
-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 고문은 본 학회 주요 업무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.
- ④ 임원의 직제 및 직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.

제16조(임원의 직무대행자 등)

- 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동의를 받아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하되,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② 수석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궐위된 경우에는 부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7조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정관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학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내지 제2호의 감사결과,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, 이사회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4. 제3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이사회와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18조(명예회장 및 고문) 회장은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장단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를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추대할 수 있다.

1. 명예회장: 직전 회장을 포함한 약간 명
2. 고문: 학회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사람 중 약간 명

제19조(지회 및 위원회) 회장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,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0조(사무국)

- ① 학회의 회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②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4장 총회

제21조(총회의 구성)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22조(총회의 구분과 소집)

-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②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제23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정관의 변경
2. 임원의 인준 및 해임
3. 결산 및 예산의 승인
4. 사업계획의 승인
5. 그 밖의 중요사항

제24조(총회 정족수)

- ① 총회는 정회원 1/4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과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.
-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,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5조(총회 소집의 특례) 회장은 정회원 5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고,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제26조(총회 의결제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의 해임의결에 있어서 자신이 관계된 자
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가 수반되는 사항의 의결에 있어 학회와 자신의 이해가 상반되는 자

제5장 이사회

제27조(이사회 구성)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
제28조(이사회 기능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
2. 총회에 부의할 정관 변경 및 회장 및 감사 추천, 기타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
3.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, 회비의 책정 및 징수,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5. 회원의 승인, 제명, 징계와 포상에 관한 사항
6. 회원의 의무 및 권리에 관한 사항
7. 정관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
8.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
9. 그 밖의 중요한 사항

제29조(이사회 소집)

① 회장은 연 2회 이상 정기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며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3.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

② 제1항의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장은 회의 7일 전까지 모든 임원에게 회의 안건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(전자우편, 홈페이지 공지 등 포함)으로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.

③ 회의 전 위임장을 제출한 자도 출석으로 간주한다.

제30조(이사회 정족수 등)

① 이사회는 제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.

② 회의 전 위임장을 제출한 자도 출석으로 간주하며 위임받은 자의 의사에 따른다.

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나,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.

④ 심의 또는 의결사항 중 경미한 의결사항은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.

제6장 자산 및 회계

제31조(재정)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회원(개인/단체)의 회비(논문회비 및 일반회비)
2. 찬조금 또는 지원금
3. 사업에 부수되는 수익
4. 자산에서 생기는 수익
5. 그 밖의 수익

제32조(회계연도)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33조(예산 및 결산)

- ① 회장은 매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·지출예산서와 사업실적 및 수입·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사업계획 및 수입·지출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수립하고, 사업실적 및 수입·지출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③ 제2항의 이사회 의결 결과를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총회에서 승인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.
- ④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학회 시설의 유지운영, 전년도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사업의 시행, 사무국 직원의 급여, 그 밖의 학회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에서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본다.

제34조(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) 예산 외의 채무부담이나 권한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장 정관 변경과 해산

제35조(정관 변경) 본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36조(시행규칙)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제37조(준용 규정)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
제38조(해산)

- ① 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.
- ② 학회의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유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서 도달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 (설립자의 기명날인) 본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